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2009. 7. 17.

개정 : 2022. 1. 2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전한 교육·연구·집단활동 환경 조성을 통한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안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대학소속기관, 대학소속조직, 학생자치단체 및 대학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며, “총장”을 말한다.
4.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5.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감독자”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대학구성원”이란 학생, 교직원,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
8. “학생”이란 대학에 소속된 재학생을 말한다.
9.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대학생활과 관련된 또는 대학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10. “계약업체직원”이란 대학, 대학소속기관, 학생자치단체와 물품·용역·공사·임대 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의 대표자와 근로자를 말한다.
11. “대학소속기관”이란 기관의 명칭을 불문하고 총장 또는 총장이 임명한 자가 관리하는 처·국·분부·대학(원)·지원·연구·부속시설 등의 조직단위를 말한다.
12. “대학소속조직”이란 조직의 명칭을 불문하고 대학의 조직체계 상 대학소속기관에 속한 학과, 부서 등의 조직단위를 말한다.
13. “대학안전사고”란 대학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14. “대학생활”이란 대학이 제공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교육·연구·집단활동 등을 말한다.
15. “학생자치단체”란 단체의 명칭을 불문하고, 학생회 또는 학생 대표자가 운영·관리하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조직단위를 말한다.
16. “학생집단활동”이란 재학생(예비신입생 포함)의 학교 밖 국내·외에서의 집단연수, 현장학습·연구 활동 등을 말한다.
17. “학생집단연수”란 대학의 동아리·학생회·학과·단과대학·대학이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O·T, M·T, 환영회, 축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8. “대학행사”란 대학소속기관, 대학소속조직 또는 학생자치단체가 주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식, 축제, 기념식, 공연, 전시회, 홍보·관측회, 경기, 대회(콘퍼런스), 야유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일반행사, 50명 미만의 소규모행사로 구분한다.
19. “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의 따라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의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를 말한다.

- 제4조(안전보건정책 및 방침)**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한 대학 실현을 위한 방향과 목표에 관한 대학의 안전보건정책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방침으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정책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모든 대학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정책이 관련 법령의 변경, 시대적 요구나 대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업무체계를 구성하는 조직 구성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책무를 갖는다.

1. 자신이 지휘·감독·관리 또는 대표하는 대학생활(이하 ‘해당활동’이라 한다)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그에 따른 안전 개선계획의 수립·실행
2. 해당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해당활동을 위한 시설·공간에 대한 안전 확인·감독
4. 해당활동의 안전개선을 위한 안전관리전담부서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안전관리전담부서와의 연락, 보고, 업무협조를 위한 안전업무협력관의 지정·지휘·감독
6.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책임자)**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분장 및 책임의 한계설정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0. 교직원 및 학생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전담부서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별표2]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침에 따라 수립한 안전 기본계획의 이행
2. 시설물,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선
3.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공시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대외업무
6. 직원 대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보건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별표3]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2.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3. 가벼운 부상에 대한 응급처치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실행 및 주기적 성과측정
2.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3.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안전보건관리총괄팀장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전담부서)**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안전보건관리전담부서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전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안전보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기본방침 설정, 관리감독자가 작성한 각 부서 계획수립의 취합·검토·조정, 주기적 성과평가 및 필요 시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요구
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제반 안전보건 관련 절차서 및 지침서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보건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산재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5.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6.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7.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팀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안전보건관리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3.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6.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대학안전보건위원회)** ① 대학구성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년 1회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교직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 대학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대학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3장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관리활동

**제12조(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생안전교육과 교직원안전교육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안전교육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신입생 안전교육, 재학생 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으로 구분한다.
- ④ 교직원안전교육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신규보직자 안전교육, 재직자 안전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3조(안전관리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는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조치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붕괴, 화재·폭발, 폭력범죄,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사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비상사태별 대응행동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사건 발생 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사건 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응절차
  6.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등

**제1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대학 내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16조(사고발생 시 보고·처리절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적으로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1명 또는 부상5명 이상의 대학안전사고
2. 대학 교육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3. 대학에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4. 대학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5.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② 관리책임자는 NDMS(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시스템) 피해 현황 탑재를 위해 교육부 상황보고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방지와 피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고 발생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대학구성원은 이를 안전관리전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사건·사고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피해자가 학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① 사고 원인조사는 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 안전사고인 경우에는 대학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조직·단체에 개선 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사고·사건 재발방지 개선요구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고·사건 재발방지 개선요구서」를 받은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개선 일정에 따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교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동일재해 예방대책, 개선 내용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22. 01.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별표1] 안전보건관리 조직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T/O

학교명	경영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비고
인하공업 전문대학	1	1	1	1	각팀, 센터	상시 근로 자수

\* 경영자 : 학교법인 이사장

## [별표2]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8조)

### 안전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관리책임자
  -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별표3]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